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8
----------	------

2013년 7월 3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4월 30일, 박태규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5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3년 7월 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태규 의원)

○ 제안이유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과 동 조례에서는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해당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 대상에도 들지 않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

고 설계변경 계획단계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가.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100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동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능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 대상에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기본적인’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쾌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심의 자체를 회피¹⁾하는 구실이 되고 있고,

○ 또한,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도 들

1) 최근 5년간 심의요청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했음.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설계)심의 운영 개선방안’ 방침서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호 2013.1.24)

지 않아 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채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 본 개정안은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의 계획단계에서 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 [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준공처리 된 서울시 발주공사 161건 중 모든 공사가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중 2~3회 설계변경이 65건, 4~5회 설계변경이 41건이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횟수도 47회나 달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전차단을 위한 본 개정안 취지는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음.

[표 1] 최근 3년간(2010~2012) 준공 된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건수

기관명	공사규모	총 발주 건수	총 계약금액 (억원)		설계변경 횟수별 총 건수					설계변경 총금액 (억원)	1회5억원 이상 설계변경 횟수	1회10억원 이상 설계변경 횟수
			최초	최종	계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합계	계	161	24,676	28,381	161	45	65	41	10	3,705	39	47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23	4,491	5,050	123	40	55	27	1	559	39	-
	100억원 이상	38	20,185	23,331	38	5	10	14	9	3,146	-	47
본청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1	558	573	11	2	6	3	-	15	1	-
	100억원 이상	-	-	-	-	-	-	-	-	-	-	-
사업소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12	3,933	4,477	112	38	49	24	1	544	-	-
	100억원 이상	38	20,185	23,331	38	5	10	14	9	3,146	-	-

(자료 : 서울시 재무국)

-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최초 설계의 부

정확성, 성급한 공사 시행, 잦은 정책변경, 최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의 편법 보전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공사 발주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설계변경 심의위원이 본부 내 팀장과 직원, 외부위원으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다만,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설계변경 방침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시행자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설계변경 실시설계내역서의 물량이나 단가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 시행여부를 사전 통제하는 기능은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약심사에서 설계변경 건이 무산된 경우가 없었으며 현행 계약심사 체제²⁾로는 이를 결정할 만한 실질적 권한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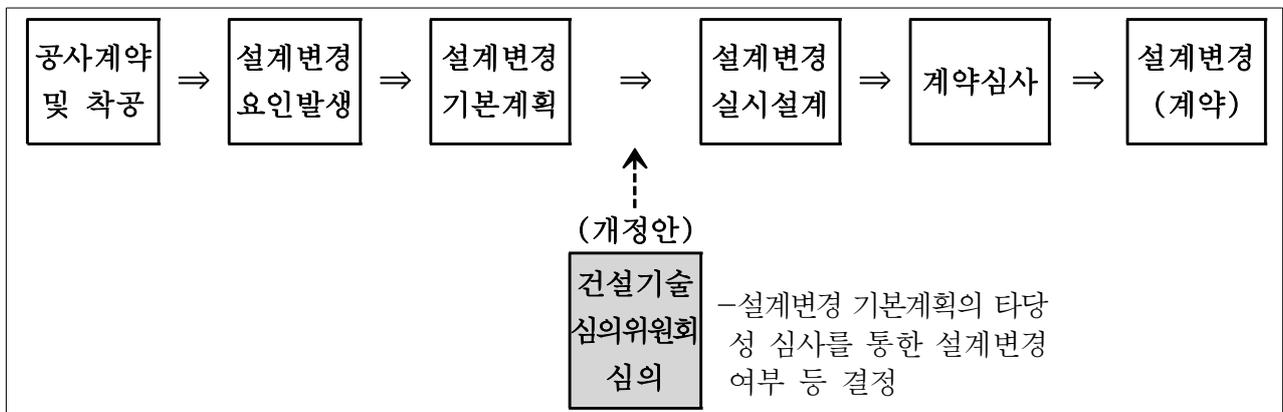
2) 현행 계약심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아닌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약심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조정이나 공법조정 등 단순 조정업무 이상의 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설계변경의 시행여부 결정 등은 사실상 수행이 어려운 체제임

[표 2] 설계변경 심의에 대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100억원 미만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주요검토사항 (주관부서)
계약 심사	현행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계약금액의 5% 이상 공사	설계변경물량(수량), 단가산출의 적정성 등 (재무국 계약심사과)
	개정안	계약금액 20억원~100억원 미만 공사중 설계변경 증액분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건설 기술 심의	현행	설계심의(총공사비 100억원 이상)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계획, 조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 등
	개정안	총공사비 20억원~100억원 미만 공사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변경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시행여부 결정 (개정안) (기술심사담당관)

○ 따라서, 설계변경 기본계획 방침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당해 설계 변경 사유 및 계획의 타당성을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설계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할만하다 할 것임. ([표 3] 참조)

[표 3] 현행 설계변경 절차와 개정안



- 본 안이 시행될 경우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위원회가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여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설계변경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에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이를 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본 개정안이 새로이 추가·신설하려는 설계변경에 대한 건설기술심사의 취지가, 3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건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투자심사의 연계선 상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중복성 회피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만,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계약심사 절차에 본 개정안의 건설기술심사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주부서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한 심적 부담 증가로 설계변경 지양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고 최초 설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본 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박태규 위원)

답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만, 업무과다가 예상되므로 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해주시길 요청 드림.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최소 1회 이상, 2~3회가 65건, 4~5회가 41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횟수도 47회나 달하는 등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것 아닌가? (정용립 위원)

답변) 설계변경이 잦은 것 인정함.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심의 대상을 축소 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8
----------	------------

제안일자 : 2013년 7월 3일

제안자 : 오봉수 위원 외 8명

1. 수정이유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심의 대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어 심의 대상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함. (안 제3조 제1항제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p> <p>제3조(기능) ①</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u></p> <p>가. <u>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u></p> <p>나. <u>100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u></p> <p>8.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p> <p>제3조(기능) ①</p> <p>-----</p> <p>-----</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7. -----</p> <p>-----</p> <p>-----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p> <p>8. -----</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소위원회) ① (생략)</p> <p>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p> <p>2.~4. (생략)</p> <p>②~⑨ (생략)</p>	<p>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 제8호----- -----</p> <p>2.~4. (현행과 같음)</p> <p>②~⑨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6조(소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4. (개정안과 같음)</p> <p>②~⑨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이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6조(소위원회) ① (생략)</p> <p>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u>제7호</u>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p> <p>2.~4. (생략)</p> <p>②~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p> <p>제3조(기능)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u></p> <p>8.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 <u>제8호</u> ----- -----</p> <p>2.~4. (현행과 같음)</p> <p>②~⑨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